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94
----------	-----

2009년 7월 10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09년 6월 15일 회부
다. 상정결과 :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09년 6월 29일 상정 · 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관 이성)

가. 제안이유

청렴한 공무원을 발굴 · 시상함으로써 청백리 정신을 고양하고
공직사회 반부패 문화 정착 및 대시민 청렴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청백리 시상제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의 목적, 종류 및 선정절차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수상인원 : 대상 1명, 본상 2명
 - 수상자 선정기준 : 청렴 · 결백성 및 헌신 · 봉사성, 공 · 사 생
활의 건실성 · 전진사회 기풍조성에 기여한 자

- 나.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 다.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수상자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시 상 금 : 대상 5백만원, 본상 2백만원
 - 특별승진 : 대상을 수상한 6급 이하 공무원

□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 나. 예산조치 : 2009년 2차 추경에 반영(예산담당관과 협의)
- 다. 합의 : 행정국(인사과)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입법예고(2009. 2. 5 ~ 2. 25.)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박용훈)

① 조례안 추진 목적과 제호 선정 사유

가. 하정 청백리상 제정 목적

- 본 제정조례안은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공직사회 청렴·봉사정신을 북돋우며 확산코자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이하 '청백리상'이라 함)'의 근거와 절차 및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 구성, 회의, 간사, 수당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나. 하정 선정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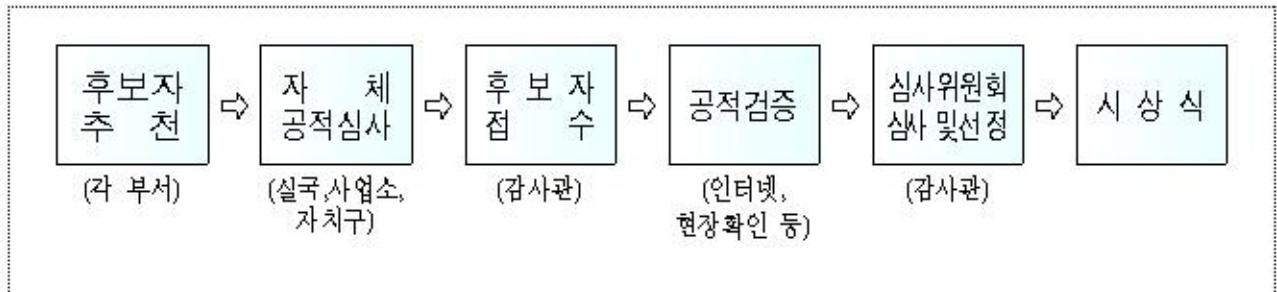
-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청백리로서 '선초삼청'이라는 '하정(夏亭) 유관', '고불(古佛) 맹사성', '방촌(厖村) 황회'와 '강호산인(江湖散人) 죄만리'가 거론된 바, 맹사성과 황회는 재임 기간 중에 업무상 재량 남용으로 당대에 비판받은 일이 있고, 죄만리는 대표적인 한글 창제 반대 인물이기 때문에, 유관의 호를 따서 청백리상의 명칭으로 채택하였음.

② 세부 조례내용 검토

가. 하정 청백리상 선정절차(안 제3조)

- 서울시청과 자치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근속 10년 이상 공무원 중에서 3명(대상 1, 본상 2) 이내로 선발하여 매년 9월에 시상하고자 하는 바,
- 실·국·본부, 사업소, 자치구별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후보자를 추천하면 감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하여 수상자를 심의·결정함.

<청백리상 선정 절차>



- 그러나 수상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하였음(안 제3조 제2항 단서).

나. 심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과 구성(안제4조)

- 청백리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바, 청백리상 선정·취소, 수상등급 결정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되, 감사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청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회의 개최시마다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며,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되는 것으로 하였음.
- 그러나 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위원 구성방식을 참조하여, 심사위원회도 위원의 다양성·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명시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른 조례의 시민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맑은서울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환경·교통·에너지 및 도시계획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2. 대기질 개선사업 관계부서의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자

◎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1. 당연직 위원 : 경쟁력강화본부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도시계획국장·물관리국장·정책기획관·환경기획관·주택국장
2. 위촉위원 : 환경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 서울특별시 문화재 찾기 시민위원회 조례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문화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대학교수, 전문가, 시민
3. 서울특별시 관련 공무원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교통·환경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당연직 위원 : 서울특별시장, 행정2부시장, 경영기획실장, 맑은환경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교통기획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 위촉위원
 1. 교통·환경·소비자 및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2. 교통·환경·보건위생·도시경제·도시계획 및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자동차업계 대표, 버스·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 대표, 기업인 및 상공인 대표
 4. 언론인 및 법조인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다. 수상자에 대한 특전 (안제8조)

- 시장은 청백리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는 바, 대상은 5백만원, 본상은 2백만원으로 하였음.
- 또한 대상을 수상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감사관은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특별승진과 관련하여 명확한 지침이나 준용조항이 없으나,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에는 구체적인 실행지침이 마련되어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 5. (생략)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청백리 포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2.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어야 하고,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줄일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 및 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및 응시 배수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30조·제38조 및 제38조의3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 검토하는데 청백리상은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 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청백리 포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동 임용령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도달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위 법령 준용 조항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하정청백리상 수상자 중 대상 수상자에 한해서 특별승진 추천을 함은 그 대상이 너무 협소하므로 본상 수상자에게도 그 기회를 함께 부여해야 할 필요성 있음.
(답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질의) 제정안 제3조제1항에서 ‘인터넷 등 공개검증’이라는 조문은 사실상 중복된 용어를 반복한 것이므로 정리가 필요함.
(답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질의) 제정안 제4조제6항에서 위원을 ‘회의개최시마다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회의개최시’라는 용어보다는 ‘매년’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답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5. 수정안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재석 8명, 전원일치)

- 보다 합리적인 위원회의 구성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특별승진제도에 따른 추천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안 제3조, 제4조 및 제8조를 수정함.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94
----------	-----

제안년월일 : 2009년 7월 10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회

1. 수정이유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위원회의 구성과 상위법령에 근거한 특별승진제도에 따른 추천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안 제3조제1항 중 “인터넷 공개검증”을 “공개검증”으로 수정함(안 제3조제1항).
- 나. 안 제4조4항 중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경륜을 갖춘 전문가와 서울특별시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함(안 제4조제4항).
- 다. 안 제4조제4항 후단 “한다”를 “하며, 다만 위원 중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수정함(안 제4조제4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인터넷 공개검증”을 “공개 검증”으로 한다.

안 제4조제4항 중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경륜을 갖춘 전문가와 서울특별시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한다.”를 “하며, 다만 위원 중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6항 중 “회의 개최시마다”를 “매년”으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대상”을 “상”으로 한다.

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 ①

하정 청백리상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하정 청백리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하정 청백리상의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청렴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감사관으로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위원은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가와 서울특별시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감사관으로 하며, 다만 위원 중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제정안과 같음)

<p>⑥ 위원은 <u>회의 개최시마다</u>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p> <p>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p>	<p>⑥ --- <u>매년</u> ----- ----- -----.</p> <p>⑦ (제정안과 같음)</p>
<p>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p> <p>② 회의는 회의 개최시마다 구성위원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5조(회의) (제정안과 같음)</p>
<p>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p>	<p>제6조(간사) (제정안과 같음)</p>
<p>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7조(수당) (제정안과 같음)</p>
<p>제8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감사관은 수상자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5백만원, 본상은 각각 2백만원으로 한다.</p>	<p>제8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제1항의 특별승진 추천대상자는 대상을 수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p> <p>④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p> <p>제9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특별승진 추천대상자는 상을 수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p> <p>④ (제정안과 같음)</p> <p>제9조(대리 수상) (제정안과 같음)</p>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하정(夏亭)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렴·결백하고 헌신·봉사하는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종류 및 인원)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이하 “하정 청백리상”이라 한다)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1명, 본상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선정절차) ① 감사관은 실·국·본부, 사업소 및 자치구의 장으로부터 자체공직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및 공·사생활의 건실성,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하정 청백리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 ① 하정 청백리상 수상후보자의 공직심사와 수상자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하정 청백리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하정 청백리상의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가와 서울특별시의 3급 이상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감사관으로 하며, 다만 위원 중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매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회의 개최시마다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상장 및 시상금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감사관은 수상자를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5백만원, 본상은 각각 2백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특별승진 추천대상자는 상을 수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④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제9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